

3.1.5 국제교류위원회규정

제정 1996. 06. 19.

개정 2000. 04. 21.

개정 2009. 09. 07.

제1조 (명칭) 본회는 초당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위원회는 본 대학교와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간에 체결된 협정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여 국제교류 및 학문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구성)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, 위원은 부총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대학 및 외국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
2. 교수 및 학생의 국제교류를 통한 강의, 공동연구, 개인연구 및 유학에 관한 사항
3. 출판물 및 연구자료 교환에 관한 사항
4. 외국대학교 교환강의 및 공동 심포지엄에 관한 사항
5. 외국대학교 교수초빙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
제5조 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 (의결)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